

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9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8월 07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고병국, 오한아, 여 명,  
최 선, 이동현, 김정태, 이광호,  
김화숙, 강동길, 우형찬, 홍성룡,  
김제리, 장인홍, 봉양순, 김소양,  
오현정, 김상진, 이경선, 이영실,  
김기덕, 김춘례, 서윤기, 전석기,  
장상기, 임종국 의원 (26명)

## 1. 제안이유

- 금년은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,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
-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
-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(안 제31조10호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 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

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(감면)제10호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### 나. 추계결과

○ 총비용 = 466,320천원(연간 93,264천원)

- 산출방식  $\sum_{i=1}^5$ (연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순위자1명 하수도요금 감면액) $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(10㎡당 이용액 X단가400원) X 12개월 1,943명 = 93,264,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세입	하수도 요금 감면액 (조례안 제2조)		△93,264	△93,264	△93,264	△93,264	△93,264	△466,320
	소계(a)		△93,264	△93,264	△93,264	△93,264	△93,264	△466,320
세출	○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	93,264	93,264	93,264	93,264	93,264	466,320

※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산출예산 반영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석관(주무관) 이수연

☎ 02-2180-7945

e-mail : sooyeon7@seoul.go.kr